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건축문화유산 정밀실측조사 지침 개정 방향 고찰

- 정성적 지침 항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Guidelines for Precise Survey of Architectural Heritage

- Focusing on Qualitative Guidelines -

○한 동 완** 이 서 산**
Han, Dong-Wan Lee, Seo-Sa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Guidelines for Precise Survey of Architectural Heritage (2014), focusing on qualitative criteria such as survey procedures, deliverables, preliminary data collection, and measurement practices. Through the review of recent survey reports and field investigations, the study considers items that require clarification or supplementation and suggests revisions to enhance consistency and usability.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survey report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updates of technical and quantitative standards.

키워드 : 건축문화유산, 정밀실측조사, 지침, 정성적

Keywords : Architectural Heritage, Precise Survey, Qualitativ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밀실측조사보고서는 해당 건축문화유산의 역사적 이력과 현황을 기록한 총서적 성격을 지닌다. 보고서에는 전체 구조와 부재의 형태 및 치수가 반영된 도면이 포함되며, 이는 향후 보존·관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건축문화유산 정밀실측은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662호, 2024.5.17.) 제3장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은 제정 이후 10여 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행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지침 중 정성적 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은 과업지침, 일반지침, 세부지침(목조편, 석조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밀실측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과업지침과 세부지침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지침은 행정적 유의·처리 위주의 내용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술적·정량적 데이터 중심의 지침 항목은 분석대상에서 배제하고, 정성적 성격을 띠는 4개 항목(① 수행절차, ② 성과품, ③ 기초자료조사, ④ 정밀실측)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2023~24년에 발간된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개정 필요사항을 고찰하였다.

2. 정밀실측조사 지침

2.1 과업지침

과업지침은 정밀실측조사의 수행절차와 성과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수행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사진촬영이 도면작성 이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실측조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조사 단계에서 사진촬영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도면작성 과정에서 재사용 흔적, 치목 흔적, 보강 현황 등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절차에서는 사진촬영을 정밀실측 이후, 도면작성 이전 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과품 목록을 살펴보면, 현행 지침은 보고서·실측도면·복원설계도서 외에도 사진첩, 조사자료집, CD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첩과 조사자료집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 학예연구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National Research of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whan34@korea.kr)

이 연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조사연구의 건축문화유산 기술연구 과제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NRICH-2505-A75F-1

디지털 자료로의 활용이 어렵고, 장기 보관 시 데이터 손실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CD 역시 저장 용량의 한계와 보관 관리의 불편성으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침에 따라 CD·사진첩·조사자료집 제출을 명목상 과업내용서에 포함하되, 별도로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품 항목은 단순화하여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는 기록 보존용과 활용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제출하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표1. 정밀실측조사 수행절차

(기존)	(개정제안)
기초자료조사→정밀실측→ 도면작성→사진촬영→ 보고서작성→감수	기초자료조사→정밀실측→ 사진촬영→도면작성→ 보고서작성→감수

표2. 정밀실측조사 성과품 목록

(기존)	(개정제안)
보고서, 실측도면, 복원설계도서, 사진첩, 조사자료집, CD(보고서, 사진, 도면, 수집자료, 스캔데이터 등 각 2개씩)	보고서, 실측도면, 실측야장, 외장하드(보고서, 사진, 도면, 수집자료, 스캔데이터 등)

2.2 세부지침

세부지침은 목조편과 석조편으로 구분되며, 기초자료조사, 정밀실측, 도면작성,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감수, 성과품 지침,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조사와 정밀실측을 중심으로 개정·보완 사항을 검토하였다.

기초자료조사는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작성의 선행 단계이자 필수 절차로, 조사자의 판단, 접근 가능 범위, 소장 자료의 유무 등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수집 대상 자료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록화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밀실측 항목은 현재 “재질, 구조, 기법, 단위부재의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추상적 표현에 그쳐 조사자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표3. (현행) 기초자료조사 항목

· 기존자료활용 - 각종 보고서(수리보고서 포함)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당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존 조사 자료(정기조사, 긴급점검 등) 활용 ·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 - 학술연구논문, 단행본 등과 역사기록은 원문을 옮겨 적고 출처를 명기(참고문헌 수록) - 고증자료(창건·중수·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문과 번역문 수록(단, 문화재의 연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표지를 포함) - 전언을 통한 당해 문화재 이력 확인 및 수록
--

표4. (개정제안) 기초자료조사 항목

- 보고서 및 관련 연구자료 조사
 - 각종 보고서, 문서, 학술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목록표(목록, 출처, 생산연도 등) 작성
 - 보고서: 지정조사보고서, 승격자료보고서, 정기조사보고서, 안전점검·진단보고서, 보존처리·해체·수리보고서, 단청기록화조사보고서, 일제조사보고서 등
 - 문서: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상황, 행정정보 등
 - 학술자료: 관련 연구논문, 간행물, 단행본 등
- 문헌 및 기록자료 조사
 - 과거 문헌, 기록자료, 소장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목록표(목록, 출처, 생산연도 등) 작성
 - 문헌과 기록자료는 원문 내용과 사진을 포함한 번역문 수록
 - 문헌: 고도서, 고문헌, 고지도, 실록, 일기, 의궤, 기문
 - 기록자료: 상량문, 목서명, 중수기, 명문, 편액, 현판, 주련, 명문기와(위치 표시 수록)
 - 소장자료: 소유자·관리자·시행청 및 기록관 보관 자료(관련 문서, 도면, 사진, 유리건판 등)

표5. (개정제안) 정밀실측 항목 보완 내용

- 정밀실측조사는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문화유산의 기법, 계획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신·구부재를 구분하여 표기하며, 개별 부재 등에서 시기·기법이 구분될 경우 해당 부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키플랜과 기법별 상세도를 작성한다.
- 해당 건축문화유산에서 중요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재의 조각·무늬, 단청 등이 있을 경우 상세도를 작성한다.
- 부재의 개수가 많고 각각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계획치수를 파악할 수 있는 부재를 중심으로 실측한다.
- 부재별 재사용·전용 흔적, 결구·장부 홈, 치목흔, 보강 현황 등 상세히 조사한다.

3. 결론

현재 발간되는 정밀실측조사보고서는 수행 기관·업체에 따라 수집 자료와 보고서 구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의 고품질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지침 개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수행절차, 성과품, 기초자료조사, 정밀실측 등 정성적 지침 항목을 분석하여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항목 신설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현행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기술적·정량적 항목(예: 3D 스캐닝, 도면작성 등)은 최신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에는 관련 지침서와 현장 실무진·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문화재청,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 2014
2. 안동시, 안동 봉황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4
3. 안동시, 안동 체화정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4